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188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REDACTED]

[REDACTED]

[REDACTED]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변 론 종 결

2016. 9. 6.

판 결 선 고

2016. 10.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409호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1.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의 스포츠학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다.
- 나. 참가인은 2014. 12. 2. 원고의 저서 및 논문 '스포츠 영어의 이해와 연습'(2013년), '관찰학습 유형이 용무도 굴러치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2011년), '심신양생, 심신단련의 전인적 체육교육사상 연구'(2013년)의 표절 등을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5. 1. 29.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가 2015. 4. 22.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참가인은 이를 보완하여 2015. 6. 22. 다시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5. 7. 22.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17.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



였으나, 피고는 2015. 10. 14. 아래 ① 내지 ③항 기재 징계사유(이하 '제1 내지 3징계 사유'라 한다)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이라 한다).

① 원고가 2013년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스포츠 영어의 이해와 연습'은 2011년 연구실적인 '스포츠 영어 연습'의 증보판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이를 초판인 것처럼 연구실적으로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위 2013년 저서 중 '챕터 3 TOEIC 연습'은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1020 문제'의, '챕터 4 숙어'는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파워-X-140 문형'의 표절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공동저자로 표시되어 있는 논문 '관찰학습 유형이 용무도 굴러치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아무런 기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저자 표시를 하였다.

③ 원고의 논문 '심신양생, 심신단련의 전인적 체육교육사상 연구'(2013년)는 김명미의 논문 '활인심방에 내재된 심신일여의 체육교육사상'(2011년)의 표절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을나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스포츠 영어의 이해와 연습'(2013년)은 '스포츠 영어 연습'(2011년)과 제목, 목차 등이 다르고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스포츠 영어 연습'(2011년)은 소량 출판 하였다가 폐간되었고 납본한 사실도 없으므로, '스포츠 영어의 이해와 연습'(2013년)을 초판으로 보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고가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1020 문제'나



'파워-X-140 문형'은 인터넷에 널리 유포된 자료로 원저작자도 분명치 아니하므로, 표절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미 '스포츠 영어의 이해와 연습'(2013년)을 연구실적에서 제외하는 데에 동의한 바 있다.

둘째, '관찰학습 유형이 용무도 굴러치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원고가 공동 저자로 표시된 것은 임웅의 일방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다. 또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미 그 시효가 지났다.

셋째, 원고는 2011. 5. 이전부터 김명미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활인심방에 내재 된 심신일여의 체육교육사상'에 관한 연구를 공동으로 하였고, 김명미는 2012. 10. 경 원고에게 위 주제에 관한 논문발표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므로, 원고가 추가 작업을 거쳐 2013년에 '심신양생, 심신단련의 전인적 체육교육사상 연구'를 단독 게재 한 것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넷째, 피고가 문제 삼은 징계사유들은 단순한 실수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간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헌한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제1징계사유의 존부

을나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스포츠 영어의 이해와 연습'(2013년)은 '스포츠 영어 연습'(2011년)과 1면부터 332면까지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고, 다만 333면부터 369면까지 숙어 단원을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 사





실, '스포츠 영어의 이해와 연습' 중 '챕터 3 TOEIC 연습'은 인터넷상의 '1020 문제'와 335문제 중 334문제가 일치할 뿐 아니라, 해설의 문구까지도 동일한 사실, '스포츠 영어의 이해와 연습' 중 '챕터 4 숙어'는 인터넷상의 '파워-X-140 문형'과 거의 일치할 뿐 아니라, 위 '파워-X-140 문형'의 원저로 보이는 이찬승의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회화 구문 140'과도 거의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스포츠 영어의 이해와 연습'(2013년)은 실질적으로 '스포츠 영어 연습'(2011년)의 개정판에 지나지 않고, 초판과 개정판은 연구실적으로서 엄연히 달리 평가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스포츠 영어의 이해와 연습'(2013년)을 초판으로서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스포츠 영어 연습'(2011년)이 소량 출판되었다가 바로 폐간되었다거나 납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결과적으로 두 저서 모두 원고의 연구실적에서 제외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스포츠 영어의 이해와 연습' 중 '챕터 3 TOEIC 연습'과 '챕터 4 숙어' 부분은 '1020 문제', '파워-X-140 문형'과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표절에 해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자료들의 원 출처가 불분명하다거나 위 자료들이 이미 인터넷에 유포되어 많은 사람들이 원 저자의 허락 없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표절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징계사유의 존부

을나 제6,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관찰학습 유형이 용무도 굴러치기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2011년)이 대한무도학회지에 게재된 이후, 주저자인 임웅으로부터 해당 논문의 별쇄본을 전달받아 자신이 위 논



문의 공동저자로 표시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논문이 표절로 밝혀지기 전까지 위 저자 표시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고, 해당 논문을 원고의 연구실적으로 제출하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웅은 원고의 동의 아래 원고를 위 논문의 공동저자로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만, 위와 같은 논문게재행위는 이미 2011년에 완료되었고, 참가인이 그로부터 2년의 징계시효가 지난 2014. 12. 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해당 사실을 문제 삼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2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제3징계사유의 존부

을나 제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명미가 2009. 6. 22.경부터 '활인심방'을 주제로 한 논문을 준비한 사실, 김명미가 2011. 4. 30. 단독으로 '활인심방에 내재된 심신일여의 체육교육사상' 논문(이하 '제1논문'이라 한다)을 완성하여 한국사회체육학회지에 투고하였으나 게재에는 실패한 사실, 그 후 김명미가 2012. 6. 27. 원고에게 제1논문의 파일을 보내 대한무도학회지에 투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원고가 제1논문에 국문초록을 추가하고(이하 '제2논문'이라 한다) 자신을 공동저자로 표시하여 2012. 6. 30.과 2012. 10. 30. 대한무도학회지에 투고하였으나 두 차례 모두 게재에는 실패한 사실, 그 후 원고가 김명미의 동의 없이 제2논문의 제목을 '심신양생, 심신단련의 전인적 체육교육사상 연구'로 바꾸고 참고문현 목록을 일부 추가하여(이하 '제3논문'이라 한다) 2013. 7. 10. 자신을 단독저자로 표시하여 한국체육교육학회지에 투고하였고, 게재에 성공한 사실, 앞서 본 국문초록과 참고문현 목록의 차



이를 제외한 제1 내지 3논문의 본문 내용은 거의 일치하는 사실, 한편, 김명미는 제1 논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2013. 6. '디지털시대의 심신일여적 체육교육사상'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사실, 그 후 김명미가 원고의 제3논문 게재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을 보내 위 논문을 집필한 것이 원고가 아닌 자신이므로 위 논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명미가 완성한 제1논문에 국문초록을 추가하고 참고문 헌 목록을 일부 수정한 것 외에 위 각 논문들에 대한 원고의 기여를 발견할 수 없는 점(갑 제8 내지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김명미가 2012년에 제2논문의 공동저자로 원고를 표시하는 데에 동의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논문이 게재에 실패하면서 위와 같은 동의의사는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국문초록 작성을 도왔다라는 것만으로 원고가 제2논문의 공동저자로 표시된 것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 는바, 결국 원고는 김명미가 작성한 제1논문을 그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창작물처럼 발표함으로써 이를 표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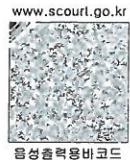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어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를 그대로 베껴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출판하고, 이를 연구실적으로 제출하기까지 한 점, 원고가 현재까지도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는 표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점, 원고가 특별한 기여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 중 일부 논문을 저자 몰래 자신의 단독 명의로 발표하기까지 한 점, 원고는 연구윤리에 관한 경각심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제2징계사유의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강석규

판사

김유정

김유정

판사

김대원

김대원



관계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끝.





정본입니다.

2016. 10. 6.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박완식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
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
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